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80 발의연월일: 2020. 7. 31.

발 의 자: 박상혁 · 김정호 · 맹성규

민병덕 • 박성준 • 위성곤

아수진비・인재근・최종윤

한병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에 대하여 가 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, 유치원 및 각급 학교들이 휴원과 휴교하여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진 근로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.

또한, 코로나19 시태의 종결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비해 가족 돌봄휴가의 사용방법과 기한이 제한적이고 무급휴가여서 현 상황을 대처하고 향후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에서 15일 유급휴가로, 사용 단위를 기존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감염병

을 비롯한 재난상황 시 휴가 기간을 15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, 유급휴가 조치를 하는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 관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 및 제39조제2항).

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제2호 본문 중 "10일"을 "15일"로, "일단위"를 "시간단위"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본문 중 "가족돌봄휴가"를 "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가족돌봄휴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"제1항 또는 제2항에"를 "제1항에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하며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 1항에 따른 재난(이하 "재난"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15일

- 을 초과하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할 수 있다.
- 1. 근로자의 가족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거나 같은 조 제15호의2에 따른 감염 병의심자로서 격리 조치가 된 경우
- 2.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(이하 이 조에서 "학교등"이라 한다)이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4조, 「유아교육법」 제31조 또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, 휴교 또는 휴원한 경우
- 3. 그 밖에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등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휴업하는 등 등교나 등원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 명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37조제2항제6호 중 "제22조의2제5항"을 "제22조의2제6항"으로 한다. 제39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9. 제22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2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 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) ① (생 략) 등을 위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 유)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(조 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 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 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(이하 "가족돌봄휴가"라 한다) 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 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청 -----. <단서 삭제> 이 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 하며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 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 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 <후단 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신설> 있다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 (<del>4</del>) -----

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1. (생략)
- 2.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,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. 다만, 가 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.

<신 설>

l. (현행과 같음)
2
<u>15일</u> 시간단위-

- ⑤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난(이하 "재난"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할 수있다.
- 1. 근로자의 가족이 「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걸렸거나 같은 조 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로서 격

## 리 조치가 된 경우

- 2.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

 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
  따른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
 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
  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
  3호에 따른 어린이집(이하 이
  조에서 "학교등"이라 한다)이
 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
 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64조,
  「유아교육법」 제31조 또는
 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3조의2
  에 따라 휴업, 휴교 또는 휴
- 3. 그 밖에 근로자의 자녀가 다 니는 학교등이 감염병의 예방 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휴업하 는 등 등교나 등원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
- 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
### ⑤ (생략)

⑥ 가족돌봄휴직 및 <u>가족돌봄</u> 휴<u>가</u>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한다. 다만, 「근로기준법」 제 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 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.

7	(생	략)
•	\ \	1 /

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.

<신 설>

#### ⑨ (생략)

제37조(벌칙) ① (생 략)

-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5. (생략)
- 6. 제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<u> </u>
<u>제1항에</u>
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
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
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
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
지원하여야 한다.
① (현행 제9항과 같음)
제37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제22조의2제6항</u>

경우

7. · 8. (생략)

③ • ④ (생 략)

제39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③ • ④ (생 략)

_	_	_	_

- 7. · 8. (현행과 같음)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- (2) -----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9. 제22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로 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④ (현행과 같음)